

「서울특별시 서초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민우의원 발의)」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3호)

○ 2026. 9. 1.
○ 행정복지위원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8. 14. (정민우 의원 발의)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8. 18.
- 다. 상 정 일 자 : 2026. 9. 1.
-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1회 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민우 의원)

- 최근 실직, 질병,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초구 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최충열)

■ 제정 배경 및 취지

1.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복지체계 구축

- 본 조례안은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건·복지상담과 필요한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신청을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경제적·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 중에는 자신의 어려움을 알리거나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행정이 복지수요를 능동적으로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적극적 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가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취지가 있음.
- 이러한 상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은 새로운 복지사업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의 복지수요를 능동적으로 발견하여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적극적 복지전달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 및 통합지원 강화

- 최근 복지정책은 복지급여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기상황에 놓인 주민을 행정이 먼저 찾아내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선제적 복지체계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위기가구의 어려움도 소득 부족뿐만 아니라 질병, 실직, 주거불안, 돌봄,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발굴 이후 상담·욕구확인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 역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통해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신속하고 두터운 지원,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한 바 있음¹⁾. 따라서 본 조례안은 단순한 대상자 발굴에 그치지 않고, 발굴 이후 상담과 욕구확인을 거쳐 공적급여 또는 민간서비스를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와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데 의미가 있음.

3.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강화

- 사회보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책임지는 영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활현장과 가까운 행정주체로서 지역의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공공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

1)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2022.11.24. 동 대책은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신속하고 두터운 지원,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함.

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역의 인구·생활환경 및 복지수요가 서로 다른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을 지역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 중심의 발굴·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²⁾. 이에 본 조례안은 서초구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기존 복지사업 및 전달체계를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체제로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음.

4.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은 행정기관과의 접촉 자체가 제한적인 경우가 있어 행정기관의 자체적인 발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관,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행정이 파악하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지역사회에서 발견하고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회입법조사처 관련 연구에서도 사례관리를 복지수요자의 발굴, 욕구사정, 서비스계획 수립 및 자원연계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로 보고, 이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유형화 연구」, 연구보고서 2024-080, 2024. 동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을 지역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활용방안을 제시함.

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제도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³⁾.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보완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위기가구를 발견·지원하고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음.

5. 조례 제정의 정책적 의미 및 검토 방향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국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지향하는 상위 법령 및 정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서초구 지역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상위 법령과 정부의 정책방향에서도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인 발굴, 신속한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및 민관협력의 강화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정책방향을 서초구의 지역 여건에 맞게 구체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조례 제정만으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에는 단순한 발굴 건수보다는 발굴된 가구에 대한 상담·욕구확인, 공적·민간서비스의 적절한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적극적 복지,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보장 및 민관협력이라는 정책방향에 부합하며, 서초구

3) 홍성대,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서의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입법과 정책』 제3권 제2호, 국회입법조사처. 동 연구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수요자의 발굴, 욕구사정, 서비스계획 수립 및 자원연계 등을 포함하는 사례관리의 제도적 활성화 필요성을 제시함.

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법적근거

○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건·복지 상담 및 사회보장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주요 법적 근거로 하여 추진할 수 있음.

○ 먼저, 기본적 상위근거로,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4)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할 책임을 가지고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5)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25조6)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국민의 다양

- 4)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 12. 20.>
- 5)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6) 제25조(운영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

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한 지역 중심의 사회보장체계 구축 및 사회서비스 연계의 기본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음.

- 특히, 본 조례안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에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⁷⁾는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보장기관이 안내 및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본 조례안이 지향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상담·안내 및 사회보장서비스 연계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라 할 수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9조의2⁸⁾는 보장기관의 장이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

- 7) 제4조(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투명·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8)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아울러 같은 법 제13조제1항9)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보장기관에 알리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제1항10)은 보장기관과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이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기관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넘어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 및 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책임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규정한 「사회보장기본법」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상담·안내 및 사회보장급여의 연계,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과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가. 안 제1조(목적)

9)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10) 제14조(민관협력)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기본적인 취지를 나타내고 있음.
-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본 조례는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비롯하여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 민관협력, 주민참여, 수행인력의 역량강화 및 안전 확보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목적조항에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중심으로 규정한 것은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핵심적인 정책대상과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를 함축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아울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것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핵심적인 정책목표라 할 수 있으며, 이후 규정하고 있는 민관협력, 주민참여 및 수행인력의 역량강화 등은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례안의 체계와 크게 배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안 제1조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그 목적을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제정 취지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목적조향으로서의 구성과 방향은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나. 안 제2조(정의)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 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과 보장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정보 공유, 예방 사업 등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위기가구”, “민관협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례의 적용범위와 주요 정책대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는 것은 조례의 체계와 내용상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먼저 제1호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 보건·복지 상담 및 민관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가 지향하는 서비스의 기본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라는 표현은 다

소 포괄적일 수 있으나,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라 상담,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등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은 것은 취지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제2호의 “위기가구”는 실직, 소득상실, 질병, 건강 문제 및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건강 및 사회적 관계 단절 등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하려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열거된 사유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등”으로 규정한 것은 개념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제3호의 “민관협력”은 민간과 보장기관이 협력하여 지원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정보 공유 및 예방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후 협력체계 구축 및 주민참여 등의 규정을 뒷받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다소 포괄적이거나,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폭넓게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 따라서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주요 정책대상과 추진방식에 관한 핵심 용어를 중심으로 그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용어를 포괄적으로 정의한 것도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각 용어의 정의는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과 대체로 부합하며, 향후 조례의 적용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의규정으로

서의 취지와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다.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 정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3조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지역의 인구구성, 복지수요 및 지역 사회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과 추진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은 지역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음.
- 또한 안 제3조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추진수단보다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책무조항의 성격과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향후

지역별 위기가구 현황과 복지수요, 서비스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안 제3조는 구청장에게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수요를 반영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기본적인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후속 조항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책무조항으로서의 취지와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라.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 정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동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안 제4조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3조에서 정한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적인 정책계획으로 연계하고 사업의 지속적·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음.

-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정책의 기본방향을 비롯하여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동별 사업계획,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협력 방안 및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정책의 기본방향부터 동 단위 사업 추진 및 관계기관 간 연계·협력에 이르기 까지 필요한 사항을 비교적 폭넓게 담고 있으며, 특히 동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지역별 복지수요와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여 동 단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지역 내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주민의 복지수요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한 것은 지역 여건과 복지수요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고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방향과 추진과제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매년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존 사회보장계획이나 복지 관련 계획과 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획 수립·운영 과정에서 기존 관련 계획과의 연계·활용을 통해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아울러 제5호의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여건과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수요를 기본계획에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안 제4조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체계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체계를 마련하고, 동별 사업계획과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협력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고, 다만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 사회보장 및 복지 관련 계획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중복을 최소화하고, 지역별 복지수요와 사업 추진실적을 반영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 안 제5조(사업)

제 정 안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 안전망 역량 강화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안 제5조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기가구 발굴, 민관협력, 담당인력의 역량강화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사업을 제시하고 있어 조례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 있음.

○ 제1호의 “위기가구 발굴 사업”은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로 연계

하기 위한 것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핵심적인 사업에 해당하며 조례의 제정 취지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제2호의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역시 행정기관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복지수요와 복지사각지대를 지역사회와 함께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제3호의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 안전망 역량 강화 교육”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대응능력을 높여 위기가구 발굴, 상담 및 서비스 연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민간 인적 안전망을 주요 협력주체로 포함하여 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제4호의 “그 밖에 구청장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지역의 복지수요와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포괄적인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특성상 지역별·시기별로 새로운 복지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의 범위를 열거된 사항에 한정하지 않고 필요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안 제5조는 위기가구 발굴, 민관협력 및 담당인력의 역량강화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사업을 규정하고, 지역의 여건과 복지수요 변화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전체적인 체계와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바. 안 제6조(주민참여 촉진)

제 정 안
제6조(주민참여 촉진) 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 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활동 실비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6조는 동 단위의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주체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중심의 복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제1항은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주민은 일상생활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복지사각지대를 행정기관보다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현장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고, 특히 동 단위의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의 참

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의 특성과 주민 간 관계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협력자로 위촉하는 것과 관련하여 참여대상이나 위촉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주민 참여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고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협력주체의 역할과 활동범위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제2항은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활동에 필요한 실비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참여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참여활동의 지속성과 원활한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활동내용과 필요성 및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실제 지원 시에는 활동내용과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과 범위를 적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안 제6조는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주체로 참여시켜 동 단위 지역공동체의 관계망과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복지활동과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취지와 사업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적절

한 규정으로 사료됨.

사. 안 제7조(역량강화)

제 정 안
제7조(역량강화)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7조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역량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적절하게 연계하기 위해서는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대응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제1항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담당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지속적인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대상자의 다양한 위기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업무라는 점에서 상담 및 의사소통 능력, 복지자원에 대한 이해 등 실무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 제2항은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변화하는 복지수요와 다양한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항 역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단순한 서비스 수혜자를 넘어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협력주체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이해와 대응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안 제6조의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또한 안 제7조는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시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특성상 담당 인력과 주민 등 참여주체의 역할 및 지역의 복지수요에 따라 필요한 교육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해 보임.
- 따라서 안 제7조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에 참여하는 주민까지 교육 및 역량강화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고, 안 제5조의 역량강화 사업과 안 제6조의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안의 체계와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아.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 정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8조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의 발굴과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를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단체의 자원과 정보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특히 협력대상을 “관련 기관·단체 등”으로 폭넓게 규정한 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협력주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구청장의 의무를 협력체계의 구체적인 구성이나 운영까지 강제하기보다는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관·단체별 여건에 따라 협력의 범위와 방식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 시에는 기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 민관협력 체계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의 기본적인 방향을 규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협력대상, 역할 및 운영방법 등은 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역

별 여건과 참여기관의 특성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범위와 방식을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안 제8조는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행정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와도 연계되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자. 안 제9조(모니터링)

제 정 안
제9조(모니터링)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 안 제9조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동 주민센터의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각 동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음.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주민 상담, 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이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장 중심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이 당초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구청장이 동 주민센터의 업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파악하

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모니터링을 통해 동별 사업 추진현황과 지역별 복지수요의 차이,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여 향후 기본계획 및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관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9조에서는 모니터링의 대상과 방법, 실시주기 및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별 지역여건과 사업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조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실제 사업 운영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안 제9조는 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상황과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의 개선 및 향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세부적인 모니터링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도 사업의 특성과 운영의 탄력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차. 안 제10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제 정 안
제10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 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안 제10조는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우편·전화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발견되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하기 위한 신고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제1항은 신고주체를 특정 주민이나 관계기관 등에 한정하지 않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이웃 등 주민을 비롯한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가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행정기관의 자체적인 발굴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를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보완한다는 점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제2항은 방문·우편·전화 및 전자통신매체 등 다양한 신고방법을 규정하여 신고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하고자 한 것으로, 신고자의 상황과 위기가구의 특성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특정 방식에 한정하지 않은 것은 향후 새로운 신고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안 제10조는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고 근거와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신고 이후 지원대상자 확인이나 사회보장급여 연계 등의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신고된 위기가구의 상황과 지원 필요성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기존 복지전달체계를 통해 후속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조례의 체계상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안 제10조는 위기가구 발견 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주체를 폭넓게 인정하고 다양한 신고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신고근거로서 그 취지와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카. 안 제11조(포상금 등)

제 정 안
제11조(포상금 등)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 민간인과 관계 기관 등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제10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지원대상자 또는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안 제11조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공기관·공무원·민간인 및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표창과 함께, 제10조에 따른 위기가구 신고를 통해 실제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¹¹⁾은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행정기관이 자체적으

11) 제14조(민관협력) ③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로 파악하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제1항에서 표창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르도록 한 것도 별도의 표창기준을 중복하여 규정하지 않고 기존 제도와 연계한다는 점에서 적절해 보이고, 제2항은 단순히 위기가구를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 신고된 가구가 실제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단순 신고 건수보다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연계 성과를 기준으로 포상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지원, 긴급복지 및 서울형 복지지원 등으로 대상을 규정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제3항에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동일 가구에 대한 중복신고, 신고자 간 우선순위, 신고와 지원대상 선정 간의 인과관계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포상제도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실제 포상금 지급에 따른 재정소요는 신고 및 지원대상자 선정, 포상금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도 시행 이후 포상금 및 지급실적과 위기가구 발굴·지원으로 이어진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안 제11조는 위기가구 신고가 실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

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만 포상금 지급기준 및 중복지급 여부 등 세부적인 운영기준은 제도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칙 등 하위 규정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파. 안 제12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 정 안
제12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11조제2항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 안 제12조는 제11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의 실질적인 기여도가 인정되기 어렵거나 포상금 지급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포상금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적정한 포상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음.
- 제1호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들의 신고는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라기보다 법령 또는 직무상 부여된 신고의무의 이행이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일반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포상제도의 취지와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음.
- 제2호는 이미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

한 경우, 제3호는 신고대상자 본인 또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를 각각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이미 행정기관이 복지지원 필요성을 파악한 가구에 대한 중복신고나 본인 또는 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신고까지 포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복지사각지대의 신규 발굴에 기여한 경우를 중심으로 포상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가족이나 친족이 위기가구의 상황을 가장 먼저 인지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친족의 신고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일정 부분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나, 본 조례의 포상금은 모든 신고에 대한 일반적인 보상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라는 점을 고려하면, 포상금 지급대상을 일정 범위로 제한한 것은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제11조제3항에서 포상금의 세부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동일 가구에 대한 중복신고, 신고 시점의 선후관계, 신고와 지원대상자 선정 간의 인과관계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안 제12조는 법령상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의 직무상 신고, 이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한 신고, 신고대상자 본인 또는 친족의 신고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단순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방지하고, 실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한 신고를 중심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내용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하. 안 제13조(포상금 환수)

제 정 안
제13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안 제13조는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부정하게 지급된 포상금의 회수를 통해 포상금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공재정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후관리 규정으로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이 조례안에 따른 포상금은 조례에 지급근거를 두고, 서초구의 재정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¹²⁾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12) 제4조(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

1. 301 일반보전금
2.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3. 303 포상금
4. 306 출연금
5. 307-01 의료 및 회복비
6.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7.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8.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9. 307-08 이차보전금
10. 307-09 운수업계보조금
11.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2.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3.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5. 308-12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6. 310-01 국외경상이전
17.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8.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9.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환수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별도의 환수체계를 마련하기보다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체계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통일적인 절차에 따라 부정수급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안 제13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포상금 제도의 공정성과 공공재정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실제 집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요건과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거. 안 제14조(정보의 보호)

제 정 안
제14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 제14조는 위기가구 발굴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개인정보 및 비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경제적 상황·건강상태·가족관계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고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단체 및 주

민 등이 협력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개인정보나 사적인 사정을 접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여하는 주체에게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부여할 필요가 있고, 또한 보호대상을 “개인정보 및 비밀”로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공개 정보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안 제14조는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기준이나 제재를 마련하기보다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참여하는 자에게 정보보호와 비밀유지의 원칙을 확인시키는 보완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누구든지”라는 표현 역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단체 및 주민 등 업무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되는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안 제14조는 위기가구 발굴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하여 정보의 무분별한 공개나 누설을 방지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사료됨.

너. 안 제15조(방문인력 안전 보호)

제 정 안
제15조(수행인력 안전 확보)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15조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특성상 방문인력이 대상자의 주거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 제1항은 구청장이 방문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제2항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현장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사전 예방과 사고 이후의 지원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방문인력의 안전한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는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안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주민 등 다양한 인력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다만 “방문인력”의 범위가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만큼, 실제 적용 시에는 조례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여 방문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 인력 등을 포함하여 사업의 성격과 실제 활동형태를 고려해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사고 발생 시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치료비의 지원범위와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공무원 재해보상 등 다른 보상제도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다만 안전용품 및 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규정하여 사고의 내용과 치료 필요성, 다른 보상제도의 적용 여부 및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재정 부담과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한 적절한 규정방식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안 제15조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현장성을 고려하여 방문인력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업무수행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와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방문인력의 범위, 치료비 지원 기준 및 다른 보상제도와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원의 형평성과 재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행정기관이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건·복지 상담 및 공적·민간서비스 연계로 통해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기존의 복지사업이나 사회보장급여를 새롭게 신설하기보다는 위기가구의 발굴부터 상담·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의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주민과 민간기관·단체의 참여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조례안의 기본적인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 추진, 주민참여, 수행인력의 역량강화,

민관협력, 모니터링 및 위기가구 신고·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개별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지역복지 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지역주민과 민간기관·단체 등이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기관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를 생활현장의 관계망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다만 주민참여와 포상제도가 단순한 신고 건수 확대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서비스 연계 및 지원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동 주민센터의 복지업무를 통해 상당 부분 수행되고 있는 만큼, 조례 시행으로 별도의 전달체계나 행정절차가 중복되지 않도록 기존 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고, 또한 매년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전년도 발굴·지원실적, 동별 복지수요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사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단순 발굴 건수보다는 상담·서비스 연계·사후관리 등 지원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주민과 민간기관·단체의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위기가구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포상금·활동실비·교육비·안전용품 및 치료비 지원 등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은 실제 수요와 사업효과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방문인력의 안전 확보와 관련해서도 지원대상 및 범위, 다른 보상제도와와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하여 지원의 형평성과 재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서초구의 여건에 맞게 제도화하고, 기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다만 조례의 제정만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기존 복지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민관협력과 주민참여를 실질화하는 한편, 발굴 이후의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실제 위기가구의 지원과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해당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공감하나, 검토보고서 지적처럼 기존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상위법령 반영도 좋지만 자치구 특성에 맞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답> 현재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조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개 구에 제정되어 있으며, 우리 구 포함 4개 구는 미제정 상태였음. 그간 조례가 없었던 이유는 복지서비스 지원이나 위기가구 발굴 사업을 이미 수행 중이었기 때문임. 해당 사업들은 ‘사회보장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등 기존 법령과 보건복지부·서울시 지침을 기반으로 추진해 왔음. 해당 조례 제정이 필수 위임 사무는 아니었기에 상위법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것임. 다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

구조를 체계화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등 사업을 한층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질> 안 제11조와 안제15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답> 안 제11조 포상금 지급 관련은 타 구 현황을 보면 연간 50만원~100만원 수준 예산을 책정하고 있음. 서울시 지침상 건당 5만원 이내로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실제 연간 발굴 실적은 10건 이내로 다소 적은 편임. 실적이 적은 사유를 확인해 보니 공무원, 통장, 신고의무자 등 대다수가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임. 실질적으로는 일반 주민이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지급 대상이 됨. 따라서 현금 지급 그 자체보다는 주민 관심 제고 및 홍보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봄. 이에 따라 내년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 우선 50만원(건당 5만원, 10건) 규모로 시범 운영한 뒤, 운영 현황을 봐서 향후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또한 안 제15조 수행인력 확보 관련해서는, 이미 개별 사업 예산을 통해 감염병 예방접종이나 휴대용 안심벨 등을 지원하고 있음. 우리동네돌봄단 등 방문 인력 확인 조직여부에 대해서도 상해보험 가입을 실제 지원 중임.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사구정리내용

- 안 제1조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를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